

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

I 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3127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3. 제출일자 : 2025년 8월 29일
4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9일

II 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III . 주요내용

1.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회계별 세입·세출 변동에 따른 예수금·예탁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재원 예탁금 반영함
2. 운용규모 : 1,949,596백만원(당초 계획 대비 352,400백만원 증가)

<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>

(단위 : 백만원)

< 수입계획 >				< 지출계획 >			
구 분	2차변경 (A)	3차변경 (B)	증 감 (B - A)	구 분	2차변경 (A)	3차변경 (B)	증 감 (B - A)
계	1,597,196	1,949,596	352,400	계	1,597,196	1,949,596	352,400
융자금 원리금회수	15,250	15,250	-	재무 활동	소 계	1,597,189	1,949,589 352,400 (22.1%)
예수금	1,350,414	1,702,814	352,400		예수금 원금상환	160,473	158,473 △2,000
예탁금 원금회수	23,970	23,970	-		예수금 이자상환	71,282	71,282 -
예치금회수	144,741	144,741	-		예탁금	1,261,800	1,614,200 352,400
이자수입	62,822	62,822	-		예치금	103,635	105,635 2,000
				행정 운영 경비	소 계	7	7 -
					기본경비	7	7 -

○ 수입계획 변경

- 예수금 : 1,350,414백만원 → 1,702,814백만원 (증 352,400백만원)

- ▶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세입·세출 변동사항 및 재난관리 기금의 여유재원 예탁 사항 반영

• 도시개발특별회계	432,528 → 434,928백만원(증 2,400)
• 재난관리기금	0 → 350,000백만원(증 350,000)

○ 지출계획 변경

- 예수금 원리금상환 : 231,754백만원 → 229,754백만원 (△2,000백만원)

- ▶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의 예치금 회수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불요

•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	2,000백만원 → 0(△2,000)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- 예탁금 : 1,261,800백만원 → 1,614,200백만원 (증 352,400백만원)

- ▶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세입·세출 변동사항 반영

• 일반회계	0 → 350,000백만원(증 350,000)
• 교통사업(특) 교통관리계정	606,000 → 613,900백만원(증 7,900)
• 도시철도건설(특)	398,900 → 393,400백만원(△5,500)

- 예치금 : 103,635백만원 → 105,635백만원 (증 2,000백만원)

▶ 수입·지출 변동을 반영하여 예치금 증액

Ⅳ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1. 변경안의 개요

- 동 변경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할 예정임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%를 초과하여 변경되는바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¹⁾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임.

2.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조성 및 운용 현황

- 동 기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²⁾에 따라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재정용자와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해에 일반·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부터 설치·운영되고 있음³⁾.

< 기금의 조성자원 및 용도 >

구분	조성자원	기금용도
통합계정	- 다른 회계·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- 예탁금 원금·이자수입 등 - 공기업으로부터 회수한 용자금 및 용자금 이자수입 -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 - 다른 회계·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- 그 밖에 통합 계정 조성을 위한 수입	-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 - 공기업으로의 용자 - 예수금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원금 상환 - 그 밖에 통합 계정의 운용·관리를 위한 경비

- 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자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- 3) 종전의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승계·통합됨.

구분	조성자원	기금용도
재정안정화계정	- 다른 회계·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* -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-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 - 그 밖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을 위한 수입	- 다른 회계·기금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- 공사채 또는 공단채의 상환을 위한 출자·보조·융자금 -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, 세외 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- 대규모 재난 및 재해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-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및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 - 그 밖에 지방채 및 기금의 운용·관리를 위한 경비

*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,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, 법령에 따른 의무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의 50% 이상으로 함.

- 당초 계획 상 통합계정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조 6,673억 4천 4백만원으로, 1조 4,110억 2천 2백만원을 수입하고, 2,317억 6천 1백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말 5조 4,880억 8천 4백만원 대비 1조 1,792억 6천만원(21.5%)이 증가할 예정이었음.

<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당초 조성계획 >

(단위: 백만원)

2024년도말 조성액	2025년도 조성계획			2025년도 말 조성액
	수입	지출	증감	
5,488,084	1,411,022	231,761	1,179,260	6,667,344

3.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- 동 계정의 2025년 기금운용계획은 3차례 변경되었으며, 1차 변경은 경남 지역 산불의 구호·지원을 위해 예치금 5억원을 지역교류기금에 대한 예탁금으로 조정하였고, 2차 변경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의 각 회계별 세입·세출 변동에 따른 예수금·예탁금 및 동 기금의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을 반영한 것임.

- 그리고 이번 3차 변경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회계별 세입·세출 변동에 따른 예수금·예탁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재원을 예탁금에 반영한 것으로, 이에 따라 수입·지출 운용 규모는 당초계획 대비 3,805억 6천 8백만원(24.2%), 기정계획 대비 3,524억원(22.1%)이 증액된 1조 9,495억 9천 6백만원으로 변경됨.

< 2025년 통합계정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>

(단위 : 백만원)

수 입 계 획					
구 분	당초	1차 변경	2차 변경 (A)	3차 변경 (B)	증 감 (B - A)
계	1,569,028	1,569,028	1,597,196	1,949,596	352,400
융자금 원리금회수	15,250	15,250	15,250	15,250	-
예수금	1,332,989	1,332,989	1,350,414	1,702,814	352,400
예탁금 원금회수	13,970	13,970	23,970	23,970	-
예치금회수	144,036	144,036	144,741	144,741	-
이자수입	62,783	62,783	62,822	62,822	-

지 출 계 획						
구 분		당초	1차 변경	2차 변경 (A)	3차 변경 (B)	증 감 (B - A)
계		1,569,028	1,569,028	1,597,196	1,949,596	352,400
재 무 동 활 동	소 계	1,569,021	1,569,021	1,597,189	1,949,589	352,400 (22.1%)
	예수금 원금상환	160,473	160,473	160,473	158,473	△2,000
	예수금 이자상환	71,282	71,282	71,282	71,282	-
	예탁금	1,237,200	1,242,200	1,261,800	1,614,200	352,400
	예치금	100,066	95,066	103,635	105,635	2,000
행 정 영 운 경 비	소 계	7	7	7	7	-
	기본경비	7	7	7	7	-

가. 수입

- 동 계정의 수입계획에서는 예수금에서 변경이 있었으며, 그 주요내용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여유자금 24억원이 추가로 예탁되고, 재난관리기금 여유자금 3,500억원이 예탁된 것으로 총 3,524억원이 증액됨.

나. 지출

- 동 계정 지출계획의 예수금 원금상환은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의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그 예탁금 원금을 상환하지 않게 되어

20억원이 감액됨(Δ 1.2%).

- 또한 예탁금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·세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3,524억원이 증액됨(22.1%).
- 그리고 예치금은 예수금 원금상환 등의 수입·지출 변동을 반영하여 20억원이 증액됨(1.9%).

라.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여부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%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⁴⁾.
- 이번 변경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마련을 위해 3,500억원의 재난관리 기금 지방채를 발행하고, 이에 따라 발생한 재난관리기금 여유자금을 동 기금으로 예탁하며, 이를 다시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“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” 사업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동 기금의 정책사업비⁵⁾가 22.1% 증가됨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지방기금법에서 정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출 요건에 해당됨.
- 그러나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발행한 지방채로 확보한 재원을 해당 기금의 설치 목적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지출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간주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는

4)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5) 일반기금의 정책사업비 변동은 비용자성사업과 용자성사업의 변동으로 발생하지만,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,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별도의 사업 없이 재무활동이 정책사업임.

지적을 받을 수 있음.

- 다만 이는 서울시의 작위라기보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방비 부담 비율을 통보한데 기인한 것임.
- 따라서 동 변경안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발행 승인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최 범 준	02-2180-8056